



제 428회 국회 (임시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경남부산과학기술원법안

검 토 보 고

〈 경남부산과학기술원의 설립 등〉

■ 허성무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7901호)

2025. 8.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문위원 임 명 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1
III . 주요내용	2
IV . 총괄 검토	4
1. 제정안의 발의 배경 및 체계	4
2. 총괄 검토의견	8
V . 주요 항목별 검토	14
1. 목적(안 제1조)	14
2. 법인격(안 제2조)	18
3. 설립(안 제3조)	20
4. 출연금(안 제9조)	23
5. 국유·공유 재산의 양여 등(안 제10조)	26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허성무의원 등 13인

나. 발 의 일 : 2025. 2. 4.

다. 회 부 일 : 2025. 2. 5.

II. 제안이유

경상남도과 부산광역시는 해양·조선, 기계·자동차, 항공우주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대한민국 경제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음. 특히 경상남도 창원시는 대한민국 최대 규모의 기계 산업단지를 보유하고 있으며, 첨단 제조업과 스마트 산업의 전환을 주도하는 산업생태계를 구축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산업 인프라와 입지적 장점에도 불구하고 경상남도과 부산 지역을 아우르는 통합적 과학기술 연구 및 교육기관이 부재하여 산업 고도화와 혁신을 선도할 고급 과학기술 인재 양성과 연구개발 기반이 부족한 실정임.

이에 경상남도과 부산 지역을 통합하는 경남부산과학기술원을 설립함으로써 경상남도과 부산 지역의 산업 규모와 잠재력에 걸맞는 과학기술 우수인재 양성 기반을 구축하고 지역사회의 균형 발전과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함.

Ⅲ. 주요내용

- 가. 경남부산과학기술원은 재단법인으로 하며, 국가·지방자치단체, 대학·연구기관 및 기업이 공동으로 출연하여 설립함(안 제2조 및 제3조).
- 나. 경남부산과학기술원은 경상남도에 본원을 두고 부산에 분원을 두며, 부설기관을 설치할 수 있음(안 제4조)
- 다. 경남부산과학기술원은 이사장 및 총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두도록 함(안 제6조).
- 라. 경남부산과학기술원은 교육·연구 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고, 수익사업을 위한 법인을 설립하여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창업지원 등 활동을 수행하도록 할 수 있으며 수익금은 경남부산과학기술원의 경영에 충당하도록 함(안 제11조).
- 마. 경남부산과학기술원은 연구결과의 확산과 활용을 위하여 보유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를 촉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교원·직원·학생의 창업을 지원할 수 있음(안 제12조 및 제13조).
- 바. 경남부산과학기술원은 매 사업연도 시작 전에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고, 학사에 관한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는 교육부장관에게도 제출하도록 함(안 제15조).
- 사. 경남부산과학기술원에 박사·전문석사·석사 및 학사 과정을 두고, 교원으로서 교수·부교수·조교수 및 전임강사를 두며, 지식기

반산업 및 과학기술에 관한 연구에 필요한 연구원을 두도록 함(안 제17조 및 제19조).

아. 경남부산과학기술원은 과학영재를 교육하고 연구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과학적 능력이 뛰어난 영재를 대상으로 한 과학영재학교를 설치·운영할 수 있음(안 제26조).

자. 경남부산과학기술원은 과학기술의 교육 및 연구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공급하기 위하여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 기금운용 수익금 등을 재원으로 하는 발전기금을 설치할 수 있음(안 제31조).

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특정과제의 공동연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에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총장에게 조치를 할 것을 권고할 수 있고, 경남부산과학기술원은 연구생산성의 향상과 연구시설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연구기관·대학 및 전문단체 등과 협의하여 연구시설·기기 등을 공동이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함(안 제34조 및 제35조).

IV. 총괄 검토

1. 제정안의 발의 배경 및 체계

- 제정안은 경상남도과 부산광역시가 해양·조선, 기계·자동차, 항공우주 등 산업 분야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지만 과학기술 연구 및 교육기관이 없으므로, 경남부산과학기술원을 설립하여 과학기술 우주인재 양성기반을 구축하고 지역사회의 균형발전과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취지로 발의되었음.
- 제정안의 체계에 대해 살펴보면, 제정안은 별도의 장을 구성하지 않고, 제1조(목적)부터 제42조(과태료)까지 총 42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음.
- 참고로, 제정안과 유사한 「한국과학기술원법」, 「광주과학기술원법」,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울산과학기술원법」도 이와 유사하게 별도의 장을 나누지 않고, 조문을 나열하는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음.
-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제1조(목적)부터 제16조(지원·조정 등)까지에서 목적, 법인격, 설립, 본원·분원 및 부설기관, 정관 등 경남부산과학기술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제17조(학위과정 등)부터 제29조(다른 학교 교원의 파견)까지에서 학위과정, 교원 및 연구원, 학위수여, 학생, 과학영재학교 등 학위과정의 운영과 관련된 내용이 규정되어 있음.
- 제30조(국제교류의 촉진)부터 제36조(국내외 대학 및 연구기관 등과의 협력)까지에서 국제교류, 기금, 기부, 공동연구 등 기타 과학기술원의 사업과 관련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 마지막으로, 제37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부터 제42조(과태료)까지에서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비밀 엄수의 의무, 벌칙, 과태료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경남부산과학기술원법안

제1조 목적

제2조 법인격

제3조 설립

제4조 본원·분원 및 부설기관

제5조 정관

제6조 임원

제7조 이사회

제8조 총장

제9조 출연금

제10조 국유·공유 재산의 양여 등

제11조 수익사업

제12조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

제13조	창업지원
제14조	사업연도
제15조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제16조	지원·조정 등
제17조	학위과정 등
제18조	평위원회
제19조	교원 및 연구원
제20조	양성평등을 위한 임용계획의 수립 등
제21조	교원의 임면
제22조	교원인사위원회
제23조	정년보장교원
제24조	학위수여
제25조	학생
제26조	과학영재학교의 설치·운영
제27조	학력의 인정
제28조	과학영재학교의 교직원
제29조	다른 학교 교원의 파견
제30조	국제교류의 촉진
제31조	기금의 설치 등
제32조	기부 등
제33조	연구계획서 및 연구보고서의 제출 등
제34조	특정과제의 공동연구 등
제35조	연구시설 등의 공동이용
제36조	국내외 대학 및 연구기관 등과의 협력
제37조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제38조	비밀 엄수의 의무
제39조	「민법」의 준용
제40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41조 벌칙

제42조 과태료

부칙 제1조 시행일

부칙 제2조 설립준비

2. 총괄 검토의견

- 제정안과 관련하여서는 우선, 현재 4개의 과학기술원(이하 “과기원”)이 설립·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남부산과기원을 추가 설립하여야 할 필요성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운영되고 있는 4대 과기원의 현황을 살펴보면, 한국과기원 등 4대 과기원은 각각 대전, 광주, 대구, 울산에 위치하고 있고, 총 재학생 수는 한국과기원(9,429명), 울산과기원(3,921명), 광주과기원(1,906명), 대구경북과기원(1,757명) 순임.
- 한국과기원의 경우 대전광역시에 있고, 학사 4,019명을 포함한 총 재학생은 총 9,429명으로 4대 과기원 중 가장 규모가 크며, 울산과학기술원은 울산광역시에 위치하고 있고, 학사 1,881명 등 총 재학생 수는 3,921명임.
- 광주과기원은 광주광역시에 있고, 학사 920명, 석사 478명을 포함하여 총 1,906명이 재학중이며, 대구경북과기원은 대구광역시에 있고, 학사 921명을 포함하여 총 재학생은 1,757명임.

[표] 4대 과기원 현황

(단위 : 명)

구 분	소재지	학 사	석 사	석·박사통합	박 사	합 계
한국과학기술원 (KAIST)	대전광역시	4,019	3,773	1,677	2,898	9,469

구 분	소재지	학 사	석 사	석·박사통합	박 사	합 계
광주과학기술원 (GIST)	광주광역시	920	478	508	406	1,906
대구경북과학기술원 (DGIST)	대구광역시	921	387	449	186	1,757
울산과학기술원 (UNIST)	울산광역시	1,881	484	1,260	296	3,921
합 계		7,741	5,122	3,894	3,786	17,053

주: 2025년 4월 1일 기준임.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4대 과기원의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 현황을 살펴보면, 2022년 기준 4대 과기원 전체 예산은 1조 9,142억 5,600만원, 정부출연금은 5,205억 2,900만원이고, 2024년에는 이보다 더 증가하여 전체 예산은 2조 117억 7,400만원, 정부출연금은 5,324억 8,100만원 규모임.

○ 4대 과기원 예산의 절반 정도는 한국과기원에서 차지하고 있는데, 2024년 기준 한국과기원의 전체예산은 1조 1,728억 5,400만원, 정부출연금은 2,297억 4,300만원임.

○ 다음으로 예산 규모가 큰 곳은 울산과기원으로 2024년 기준 전체예산은 3,427억 6,000만원, 정부출연금은 919억 600만원임.

○ 광주과기원과 대구경북과기원은 이보다 적은 규모인데, 2024년 기준 광주과기원의 전체예산은 2,597억 2,900만원, 정부출연금은

1,060억 300만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의 전체예산은 2,344억 3,100만원, 정부출연금은 1,048억 200만원임.

[표] 2022년~2024년 4대 과기원 예산 및 출연금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2년		2023년		2024년	
	전체예산	정부출연금	전체예산	정부출연금	전체예산	정부출연금
한국과학기술원 (KAIST)	1,093,522	239,231	1,163,362	228,489	1,174,854	229,743
광주과학기술원 (GIST)	267,461	103,486	275,539	112,301	259,729	106,030
대구경북과학기술원 (DGIST)	219,595	90,299	222,091	93,839	234,431	104,802
울산과학기술원 (UNIST)	333,678	87,513	354,784	89,959	342,760	91,906
합 계	1,914,256	520,529	2,015,776	524,588	2,011,774	532,481

주: 2025년 4월 1일 기준임.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제정안은 이러한 4대 과기원에 더해 경남부산과학기술원을 설립하는 것으로, 경남부산지역에 과기원이 추가 설립될 경우 제정안의 목적인 지식기반산업 및 첨단과학 분야 연구를 통한 지역 균형 발전과 국가 과학기술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측면이 있음.

○ 경상남도의 경우 밀양 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 사천 경남우주항공국가산업단지, 양산 덕계경동스마트밸리 산업단지 등이 조성되어 있고, 부산광역시도 센텀2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 등이 조

성되어 있어, 경남부산과기원이 설립될 경우 이러한 산업인프라를 바탕으로 한 협동연구, 사업화 촉진, 창업 지원등의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음.

□ 다만, 제정안의 목적인 ①지역균형발전과 ②고급 과학기술인재 양성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첫째,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 현재 과기원의 권역별 분포를 고려할 때 영남권에 추가로 경남부산과기원을 설치하는 것은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이 문제될 수 있음.

○ 현재 과기원은 중부권에 한국과기원, 호남권에 광주과기원이 있고, 제정안에서 설치하고자 하는 영남권에는 대구경북과기원과 울산과기원이 있음.

○ 그런데, 권역별 인구 및 과기원 분포 현황을 살펴보면, 제정안에서 설치하고자 하는 경남부산과기원의 권역인 영남권의 인구가 가장 많지만 이미 대구경북과기원과 울산과기원이 설치되어 있어, 과기원별 권역 인구수는 다른 권역에 비해 크지 않은 수준임.

○ 또한, 대학입학자수나 대학연구비도 중부권과 비교하였을 때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어, 영남권에 추가로 과기원을 설치하게 될 경우 중부권이나 호남권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음.

[표] 권역별 인구 및 과학기술원 분포 현황

구분	중부권 (강원·충청·대전)	영남권(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호남권 (전남·전북·제주)
인구수	약 707만명	약 1,248만명	약 560만명
과학기술원 설치 현황	한국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과학기술원별 평균 권역 인구수	약 707만명	약 624만명	약 560만명
대학 입학자수	84,933명	85,255명	41,695명
대학 연구비	1조 5,013억원	1조 7,510억원	8,735억원

주: 인구수는 2025년 1월 기준, 대학 입학자수는 2024년 기준, 대학 연구비는 2023년 기준임.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둘째, 고급 과학기술인재 양성 측면에서, 최근 경남·부산 지역의 대학 지원자 감소 추세라는 점과 향후 학령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는 추계 등을 감안할 때, 과기원의 추가 설립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경남·부산 지역의 최근 대학 신입생 충원 통계를 살펴보면, 경남·부산 지역에는 2024년 기준 31개 대학이 운영되고 있는데, 2022년 대비 2024년 모집인원은 620명 증가하였으나 지원자는 3만 688명 감소하고 있는 상황임.

[표] 경남·부산 지역 대학 신입생 충원 통계

(단위 : 명)

구분	2022년(A)	2023년	2024년(B)	증감(B-A)
입학정원	43,095	42,040	41,733	△ 1,362
모집인원(a)	50,517	50,625	51,137	620
지원자(b)	290,007	275,353	259,319	△ 30,688
경쟁률(b/a)	5.74	5.44	5.07	△ 0.67

자료: 한국교육개발원 자료를 바탕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출.

- 또한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2025년 현재 5,936명인 학령인구는 2030년에 4,989명, 2035년에는 3,873명으로, 전국적으로 학령인구¹⁾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향후 대학 및 대학원 입학자수 역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전국적인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경남·부산 지역 대학의 입학정원, 지원자 수, 입학 경쟁률이 감소추세를 고려할 때 과학기술원 설립에 신중할 필요가 있고, 경남, 부산 지역에는 31개의 대학이 운영되고 있는 상황('24년 기준)으로, 새로운 대학을 설립하기보다는 기존 대학의 과학기술 인재양성 기능 및 연구역량을 강화하는데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1) 유치원(만 3~5세), 초등학교(만 6~11세), 중학교(만 12~14세), 고등학교(만 15~17세) 대상임.

V. 주요 항목별 검토

1. 목적(안 제1조)

가. 주요 내용

- 제정안은 제1조에서 경남부산과학기술원의 설치 목적을 ①첨단 과학기술의 혁신을 선도할 고급 과학기술인재의 양성, ②지역 산업의 기술적 발전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식기반 산업 및 첨단과학 분야 연구, ③산업계와 합동연구, 외국과의 교육·연구 교류, 기술 이전, 사업화 촉진 및 창업 지원 등을 통해 “지역 균형 발전”과 “국가 과학기술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이라고 규정하고 있음.

제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첨단과학기술의 혁신을 선도할 고급 과학기술인재를 양성하고 지역산업의 기술적 발전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지식기반산업 및 첨단과학 분야를 연구하며 산업계와의 합동연구, 외국과의 교육·연구 교류, 기술의 이전·사업화의 촉진 및 창업을 지원함으로써 지역 균형 발전과 국가 과학기술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경남부산과학기술원을 설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 검토 의견

- 제정안의 목적 규정은 현재 같은 영남권에서 운영되고 있는 대구경북과기원 및 울산과기원과 거의 유사한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음.

- 제정안의 목적 규정을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의 목적과 비교하면,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서 기술의 이전·사업화의 촉진 및 창업을 지원함으로써 목적을 달성하도록 한 내용에 “산업계와의 합동연구, 외국과의 교육·연구 교류”가 추가된 것만상이함.
- 또한, 「울산과학기술원법」의 목적과 비교하면, 지역산업의 기술적 발전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한다는 부분을 제외하면 거의 유사한 내용임.

[표] 제정안과 다른 과기원의 설치 목적 비교

제정안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울산과학기술원법」	「광주과학기술원법」	「한국과학기술원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첨단과학기술의 혁신을 선도할 고급 과학기술인재 를 양성하고 지역산업의 기술적 발전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지식기반 산업 및 첨단 과학 분야를 연구하며 산업	제1조(목적) 이 법은 첨단과학기술의 혁신을 선도할 고급 과학기술인재 를 양성하고 지역산업의 기술적 발전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지식기반 산업 및 첨단과학 분야를 연구하며 <u>기술의</u> 이전·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의 첨단과학기술 혁신과 지역산업의 기술·지식 발전을 주도할 고급과학기술인재 를 양성하고 산업계와의 협동연구, 외국과의 교육·연구 교류, 기술의 이전·사업화의	제1조(목적) 이 법은 첨단과학기술의 혁신을 선도할 고급과학기술인재 를 양성하고 산업계와의 협동연구, 외국과의 교육·연구 교류, 기술의 이전·사업화의 촉진 및 창업을 지원 함으로써 국가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발전에 필요한 과학기술분야에 관하여 깊이 있는 이론과 실제적인 응용력을 갖춘 고급과학기술인재 를 양성하고 국가 정책적으로 수행하는 중·장기 연구개발과 국가

제정안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울산과학기술원법」	「광주과학기술원법」	「한국과학기술원법」
계와의 합동연구, 외국과의 교류·연구 교류, 기술의 이전·사업화의 촉진 및 창업을 지원함으로써 지역 균형 발전과 국가 과학기술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u>경남부산과학기술원</u> 을 설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사업화의 촉진 및 창업을 지원함으로써 지역 균형 발전과 국가 과학기술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u>대구경북과학기술원</u> 을 설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촉진 및 창업을 지원함으로써 국가과학기술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u>울산과학기술원</u> 을 설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과학기술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u>광주과학기술원</u> 을 설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과학기술 저력 배양을 위한 기초·응용연구를 하며, 다른 연구기관이나 산업계 등에 대한 연구지원,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를 촉진하고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u>한국과학기술원</u> 을 설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주: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과의 차이점은 밑줄로, 「울산과학기술원법」과의 차이점은 굵게 표시하였음.

□ 이에 따라, 지리적으로 인접한 대구경북과기원 및 울산과기원과 기능이 중복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음.

○ 특히, 울산과기원은 경남·부산 지역과 지리적으로 인접하여 과학기술 인재 및 인프라를 공유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어 기능이 중복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동남권 지역에서 울산과기원(UNIST)이 과학기술 고급인재 양성 및 첨단 R&D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우수교원 확보, 연구시설·장비의 효율적 공동활용, 다양

한 학문 분야 간의 융합연구 촉진 등을 위해 소관 권역 및 기능이 중복되는 과기원을 추가 설립하기보다는 UNIST에 연구 역량을 결집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표] UNIST의 경남·부산 지역 기여 현황

- (연구 분야) 동남권 지역이 특화된 제조업과 관련된 기계공학, 신소재 분야를 포함하여 AI, 바이오, 반도체, 에너지 등 핵심 전략기술 분야 인재양성 및 R&D 수행 중
- (연구 협력) 3년 간('22~'24.) 경남·부산 지역 연구기관과 99개의 공동연구과제(172억원)를 수행하고, 경남·부산 지역 산업체의 연구과제 21개(34억원) 수행
- (기업 지원) 3년 간('22~'24.) 경남·부산 지역기업 대상 기술애로 지원 676건(35개사)
- (기술이전) 3년 간('22~'24.) 경남·부산 지역기업에 기술이전 14건(1.2억원)
- (지역 협력) 한국세라믹기술원(진주시 소재)과 학·연 협동 석·박사과정을 운영하는 등 경남·부산 지역 소재 기관들과의 MOU 12건 체결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기획재정부 역시 동남권에서 旣 운영 중인 울산과기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과의 중복으로 인재 양성 역량 분산, 연구·교육 경쟁력 약화 우려되므로, 기존 과학기술원 및 인근 대학교의 내실 있는 운영 집중지원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임.

2. 법인격(안 제2조)

가. 주요 내용

- ☐ 제정안 제2조는 경남부산과학기술원을 재단법인으로 규정하고 있음.

제정안
제2조(법인격) 경남부산과학기술원은 재단법인으로 한다.

나. 검토 의견

- ☐ 제정안 제2조는 경남부산과학기술원의 법인격을 “재단법인”으로 규정하였는데, 재단법인으로 제한하여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보다 일반적인 입법례에 따라 “법인”으로 하는 방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법인은 자연인 이외에 법인격(권리능력)이 인정된 것, 즉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는 것으로, 법인에는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결합한 사람들의 단체인 사단법인과 특정한 목적에 바쳐진 재산으로 이루어진 재단법인이 있음²⁾.
- 다른 4대 과기원과 법인격을 비교해보면,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을 제외한 나머지 과기원은 “법인”으로 규정하고 있음.

2) 법제처, 「책자형 생활법령」

[표] 제정안과 다른 과기원의 법인격 비교

제정안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울산과학기술원법」	「광주과학기술원법」	「한국과학기술원법」
재단법인	재단법인	법인	법인	법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대구경북과기원이 다른 과기원과 달리 “재단법인”으로 규정된 이유에 대해, 해당 과기원은 지역균형 과학기술발전을 위한 지역 출연(연)으로 설립된 후 과기원으로 전환된 기관으로서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제3조³⁾의 입법취지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하였음.
- 다른 과기원의 경우, 법인격을 “재단”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⁴⁾하고 있기 때문에 기관 경영 등에 있어 실질적인 차이는 없음.
- 제정안도 안 제39조⁵⁾에서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어, 기관 운영상에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보이나, 일반적인 입법례에 따른다면 “법인”으로 규정하는 방향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임.

3)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제3조(설립) ① 대경과기원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에도 불구하고 정부, 지방자치단체, 대학, 연구기관 및 기업이 공동으로 출연하여 설립한다.

4) 「한국과학기술원법」 제24조(「민법」의 준용) 과학기술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광주과학기술원법」 제26조(「민법」의 준용) 광주과기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울산과학기술원법」 제25조(「민법」의 준용) 울산과기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5) 「경남부산과학기술원법안」 제39조(「민법」의 준용) 경남부산과학기술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3. 설립(안 제3조)

가. 주요 내용

□ 제정안 제3조는 경남부산과학기술원에 대하여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과기출연기관법」) 제3조에도 불구하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학, 연구기관 및 기업이 공동으로 출연하여 설립하도록 하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하도록 하고 있음.

제정안
제3조(설립) ① 경남부산과학기술원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에도 불구하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학, 연구기관 및 기업이 공동으로 출연하여 설립한다. ② 경남부산과학기술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경남부산과학기술원의 설립등기와 그 밖의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검토 의견

□ 제정안 제3조는 「과기출연기관법」 제3조⁶⁾에 대한 특례를 두고

6)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연구기관의 설립 제한) 이 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연구기관”이라 한다)을 설립하지 못한다.

있는데, 경남부산과기원은 연구 뿐 아니라 과학기술인재 양성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 현행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제3조⁷⁾에서 특례를 둔 것은 대구경북과기원이 당초 지역 출연(연)으로 설립된 후 과기원으로 전환된 사례이기 때문이라는 점에서 특례를 삭제하는 방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임.

- 「과기출연기관법」 제3조는 과학기술분야의 정부출연연구기관을 타 법에서 별도로 설립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으로, 이 때 “정부출연 연구기관”이란 정부가 출연하고 과학기술분야의 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관⁸⁾임.
- 그런데, 제정안의 내용에 따르면 경남부산과학기술원은 첨단과학 분야를 연구하려는 목적도 있지만, 첨단과학기술의 혁신을 선도할 고급 과학인재를 양성하려는 목적으로, 학위과정 및 수여(제17조·제24조), 교원(제19조·제21조·제23조), 학생(제25조)에 관련된 내용도 있기 때문에 「과기출연기관법」에 따른 출연연구기관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 참고로, 제19대 국회에서 발의되었던 「부산경남과학기술원법안(의

7)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제3조(설립) ① 대경과기원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에도 불구하고 정부, 지방자치단체, 대학, 연구기관 및 기업이 공동으로 출연하여 설립한다.

② 대경과기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대경과기원의 설립등기와 그 밖의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이란 정부가 출연하고 과학기술분야의 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관을 말한다.

안번호 1904584, 김성찬의원 대표발의)」에는 이러한 특례 규정이 없었고⁹⁾, 이에 대해 검토보고서에서는 법안상의 기관이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기능과 함께 학사 및 석·박사 등 인력 양성도 주된 기능으로 설정하고 있어, 해당 특례에서 제한하고 있는 “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관”에 해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았음.

- 또한, 현행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제3조¹⁰⁾에서 해당 특례를 두고 있는 것은, 대구경북과기원이 당초 지역 출연(연)으로 설립된 후 과기원으로 전환된 사례이기 때문으로, 출연(연)에서 전환되는 사례가 아닌 경남부산과기원의 경우 이러한 특례가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므로, 동 특례는 삭제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9) 「부산경남과학기술원법안(의안번호 1904584, 김성찬의원 대표발의)」 제3조(사무소 및 설립등기)

① 부경과기원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부경과기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부경과기원의 설립등기와 그 밖의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0)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제3조(설립) ① 대경과기원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에도 불구하고 정부, 지방자치단체, 대학, 연구기관 및 기업이 공동으로 출연하여 설립한다.

② 대경과기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대경과기원의 설립등기와 그 밖의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출연금(안 제9조)

가. 주요 내용

- 제정안 제9조에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대학 및 기업이 경남부산과학기술원의 설립·건설·연구 및 운영에 드는 경비를 충당하게 하기 위하여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제 정 안
제9조(출연금)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대학 및 기업 등은 경남부산과학기술원의 설립·건설·연구 및 운영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게 하기 위하여 경남부산과학기술원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 및 사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검토 의견

- 제정안 제9조는 국가 등이 경남부산과학기술원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데, 이 경우 유사한 다른 과기관과 비교할 때 연간 1,000억원 가량의 출연금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 2020년부터 2024년까지 4대 과기관의 전체 예산 및 출연금 현

황을 살펴보면, 규모가 큰 한국과기원을 제외한 광주과기원, 대구경북과기원, 울산과기원의 전체예산 및 정부 출연금 규모는 유사한 수준임.

- 2024년 정부 출연금은 한국과기원(2,297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과기원이 각각 광주과기원 1,060억원, 대구경북과기원 1,048억원, 울산과기원 919억원으로, 1,000억원 수준의 출연금을 받고 있음.
- 이에 따라, 경남부산과기원의 경우에도 약 1,000억원 규모의 출연금이 매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표] 2020년~2024년 4대 과기원 정부 출연금 및 전체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한국과기원 (KAIST)	광주과기원 (GIST)	대구경북과기원 (DGIST)	울산과기원 (UNIST)	합계
'20년	정부 출연금	232,165	100,219	80,878	78,553	491,815
	전체 예산	949,948	231,000	184,711	278,915	1,644,574
'21년	정부 출연금	227,885	101,555	87,291	80,958	497,689
	전체 예산	985,997	252,720	205,647	299,694	1,744,058
'22년	정부 출연금	239,231	103,486	90,299	87,513	520,529
	전체 예산	1,093,522	267,461	219,595	333,678	1,914,256
'23년	정부 출연금	228,489	112,301	93,839	89,959	524,588
	전체 예산	1,163,362	275,539	222,091	354,784	2,015,776
'24년	정부 출연금	229,743	106,030	104,802	91,906	532,481
	전체 예산	1,174,854	259,729	234,431	342,760	2,011,774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따라서, 출연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여 출연금을 지원할 것인지
에 대하여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5. 국유·공유 재산의 양여 등(안 제10조)

가. 주요 내용

- ☐ 제정안은 제10조는 「국유재산법」 등에 따른 국유재산, 공유재산 또는 물품의 양여, 무상 대부 또는 사용·수익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제 정 안
제10조(국유·공유 재산의 양여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물품관리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경남 부산과학기술원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경남부산과학기술원에 국유재산, 공유재산 또는 물품을 양여하거나 무상으로 대부 또는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나. 검토 의견

- ☐ 제정안 제10조를 규정할 경우 국유재산, 공유재산, 물품의 양여, 무상 대부 또는 사용·수익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둬으로써, 경남 부산과기원의 설립 및 운영을 원활하게 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 다만,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공유재산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였을 때, 공유재산의 양여·무상대부 관련 특례를 신설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 행정안전부는 양여와 관련하여, 「공유재산법」상 공유재산의 양여를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엄격히 금지하고 있어 관련 특례 규정 신설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 또한, 무상대부에 대해서는 경남부산과기원 신설 시 「공유재산법」상 사용료·대부료 감면 대상인 공법인에 해당될 것으로 보이므로, 특례 신설의 실익이 없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236